

영등포구의회
제146회 제1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2009. 7. 2.



行 政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■ 제정이유

-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의 예방·조기발견·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정신보건센터에 대하여 서울시 대부분의 구에서 기존의 지침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바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규범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「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■ 제정내용

- 정신보건센터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2조)
 - 명칭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
 - 위치는 영등포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정신보건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3조)
 - 정신보건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
 -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 조정

- 대상자 발견·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, 연계사업
-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
- 사례관리(가정방문·내소상담 등)
- 정신질환·자살 및 알코올 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사업
-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 등의 교육 및 모임지원 육성
-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
-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
-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4조)
 -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토록 정함
 -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함.
-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5조)
 - 구청장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수탁자는 구청 기준에 적합하게 자체 운영규정을 작성 준수토록 정함
- 수탁자의 의무 사항을 규정(안 제6조)
 -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, 정신건강 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정함.
 - 수탁자는 정신보건센터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정함
 - 수탁자는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도록 정함.
-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7조)
 -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

-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8조)
 - 구청장은 수탁자의 위탁사무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하고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 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함
-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9조)
 - 수탁자가 제6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
 -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 하지 않은 때
 -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도록 정함
-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0조)
 -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
 - 기타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
-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1조부터 제12조)
 -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토록 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함

■ 참고사항

- 정신보건센터 설치 현황
 - (1) 위치 :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-1, 보건소 지하 1층
 - (2) 위탁기관 :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
 - (3) 종사자 인원 : 총11명(정신과 전문의, 정신보건전문요원)
 - (4) 개소일 : 2006. 4. 6
 - (5) 2009년 예산 : 403,520천원
(시비 210,520천원, 구비 193,000천원)

● 기타

- (1) 입법예고(2009. 4. 23 ~ 5. 13) 결과 : 의견 없음
- 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■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과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,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고 있으며
 - 안 제2조는 센터의 명칭과 위치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고
 - 안 제3조는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
 - 안 제4조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
 - 안 제5조는 정신보건센터 위탁시 센터의 조직과 재산 관리 및 사무처리절차와 자체 운영규정을 작성·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
 - 안 제6조는 수탁자의 의무로 수탁시설의 관리 및 센터의 운영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, 관계법령이나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토록 하였고
 - 안 제7조는 운영 위탁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경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

- 안 제8조는 위탁시설의 지도감독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
- 안 제9조는 위탁취소의 조건을 명기하고 있으며, 위탁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, 각종 시설, 자료,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.

● 본 조례 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, 사례관리, 정신질환·자살 및 알코올 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사업, 정신질환자 가족 등의 교육 및 모임지원 육성사업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·조기발견·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등 지역보건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고, 또한 정신보건법 제13조,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과 연계체계 구축, 정신질환의 예방, 정신질환자의 발견·상담·진료·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,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9. 7. 2.

보고자 : 권 오 운

관 계 법 령

□ 정신보건법

제13조 (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간 연계체계 구축, 정신질환의 예방, 정신질환자의 발견·상담·진료·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·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.

제13조의2 (정신보건센터의 설치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시·군·구 단위로 정신질환자의 발견·상담·진료·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정신보건센터의 설치를 위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
□ 지역보건법

제9조 (보건소의 업무)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~ 10. (생략)
11.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
12. ~ 16. (생략)